

대한민국연극제 운영 규정

# 대한민국연극제 운영(심사)규정안

2021. 02. 08.

(사) 한국연극협회

# 대한민국연극제 운영(심사)규정

## 제1조 (명칭)

본 규정은 대한민국연극제(이하 '본 대회'라 한다)의 운영(심사)규정이라 칭한다. [2016.3.14. 변경]

## 제2조 (목적)

본 대회는 대한민국연극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극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, 경연과 축제의 병행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제를 통해 한국 연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.

## 제3조 (주최 및 주관)

본 대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(사)한국연극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해당 지회에서 주관한다.

## 제4조 (조직구성)

본 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, 운영한다.

조직위원장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이 맡고, 조직위원은 주관 시·도 지회장을 제외한 한국연극협회 이사로 구성하며,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[2016.08.31 추가]

집행위원장은 (주관 시, 도) 지회장이 맡고, 집행위원은 지회 이사로 구성하며,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[2016.08.31 추가]

## 제5조 (조직의 역할)[2017.04.17 조항 추가]

조직위원회는 본 대회의 종합계획(안)을 수립하고 행정지원 및 추진, 대회운영 주요사항의 심의조정을 총괄하며 집행위원회는 행사시작 6개월 전까지 본 대회 운영계획 및 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조직위원회의 추진을 받아 실무집행 및 운영을 담당한다. [2017.04.17 개정]

조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며 파견 직원의 인원 및 직급, 업무기간과 보수는 실행계획안으로 제안하고,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간의 협의를 거친다. [2017.04.17 개정]

본선 시상 중 주최지 자치단체장 및 관계 기관장 명의의 상금은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 [2017.04.17. 개정]

## 제6조 (경연참가단체)

본 대회 본선경연 참가단체는 16개 광역시·도의 대표극단으로 지역예선대회를 거치거나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표극단이 참여한다. [2017.04.17 개정]

## 제7조 (경연참가자격)

참가 극단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연극협회 정단체로 한다.

연출자, 배우는 해당 시도 내 지회지부 소속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대회 전년도 10월말까지

입회한 자여야 한다.

해당지역 정회원 50%이상 이어야 하며, 타지역 및 비회원 50%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. [2019.08.27. 개정] (아동, 코러스 등을 제외한 주 출연진의 비율을 말함. 비회원은 해당지역이 아니어도 됨. 코러스는 단역과 구분되며 단역은 대사가 있고 코러스는 대사가 없는 역을 말함. 단순한 구호제창은 대사에 포함되지 않음. 그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 소위원회에서 결정함.) 단, 비회원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 [2019.03.30. 개정]

**제8조 (경연참가작품)**

국내 작가의 창작극(초연, 재공연 무관)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.

- 국내창작극 기준
  - 국내 작가의 창작 희곡
  - 희곡을 제외한 타 장르 작품을 각색한 작품도 창작품으로 인정하나 반드시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- 외국 소설을 각색한 작품은 국내 창작극으로 볼 수 없다. [2018.04.30 개정]
- 작품 성격 및 규모에 따라 대극장과 중·소극장으로 나누어 공연할 수 있다. [2019.08.27. 추가]

**제9조 (경연참가제한)**

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는 경연참가가 제한되고, 이는 협회 정관 제9조 1항 명예 훼손에 대한 내부 규정안을 따른다. [2020.02.10. 개정]

**제10조 (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)**

본 대회 심사위원은 연극계 전문 인사 중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~9인으로 구성하며 주최 측에서 위촉한다. 2인은 주관 처에서 해당지역 전문인사로 2배수 추천하고 주최 측과 협의하여 위촉 구성한다. 나머지 심사위원은 주최 측의 추천에 의해 구성한다. [2017.10.30. 개정]

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.

- 1) 심사위원은 부문, 성별, 연령,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, 특정성향의 심사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.
- 2)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주최자(한국연극협회)가 지명하며,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에 경연자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심사항목 및 심사기준)**

본 대회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.

구분	비고	배점
<b>예술적 수월성 (100점)</b> - 참여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	희곡의 우수성	25
	연출의 창의성	25
	배우들의 기량과 앙상블	25
	공연의 완성도	25
계		100

**제12조 (수상자 결정)**

채점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단체상·개인상의 항목별 순위를 정한다.  
 신인연기상 자격은 데뷔 10년 이내 만38세 이하 (2019년 기준 1981년 이후 출생자) 정회원인 자로 참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선정하며, 신인상 후보가 없을 경우 연기상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.

**제13조(심사방법)**

- 1) 심사위원은 사전에 수상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. [2017.04.17 개정]
- 2) 각자 단체상을 수상할 7개 단체와 개인상을 수상할 8인을 추천한 후, 추천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토론하여 전원합의에 의해 상위 훈격 순서대로 수상단체 및 수상개인을 결정한다.
- 3)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단체 및 개인수상자를 결정한다.
- 4) 연출상 수상대상은 참가 시·도 거주자에 한하며 희곡상은 창작초연작을 대상으로 선정한다.
- 5)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작성, 심사위원회 2차 회의 후 주최 측에 제출한다.
- 6) 최종 심사회익의는 녹취하며,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. [2017.04.17. 개정]
- 7) **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사전 심사회익의 시 심사회피제를 실시한다. [2021.02.08. 개정]**

**제 14조 (시상훈격)** [2019.08.27. 개정]

개인상에서 연기상, 신인연기상(남,녀)은 부분별 인원에 상관없이 총 9명에게 수여한다.

부문	등위	내 용	시상훈격	시 상 금	시상인원
연극	단체상	대 상	대통령상	30,000,000	1
		금상	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	20,000,000	1
			주최지자체 시장상	20,000,000	1
		은상	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	10,000,000	1
			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	10,000,000	1
			주최지자체 시의회 의장상	10,000,000	1
	주최지 상공회의소 회장상		10,000,000	1	
	개인상	연출상	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	5,000,000	1
		희곡상	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	2,000,000	1
		무대예술상	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	2,000,000	1
		최우수연기상	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	5,000,000	1
		연기상	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	4,000,000	9
		신인연기상(남)	집행위원장상	2,000,000	
		신인연기상(여)	집행위원장상	2,000,000	

※ 대상 시상금은 지원금액에 따라 최대 1억까지 지급될 수 있음

**제15조 (심사결과)**

심사결과는 시상식장에서 발표하며 언론사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**제16조 (수상자 결정 유보)**

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심사한 결과,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훈격 별로 시

상을 유보할 수 있다.

### 제17조 (심사운영)

본 대회는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회의를 운영한다.

1) 주최 측은 심사에 있어서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이 철저히 공정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
2) 본 대회의 16개 시·도 참가대표, 지회장이 요청할 시에는 심사내용 원본을 공개 할 수 있다.

[2017.04.17 개정]

3) 본 대회의 본선경연내용은 비디오로 담아야 하고 비디오 장면에 정확한 일시가 표시되도록 한다.

### 부 칙('16. 3. 14) 운영규정 명칭 변경

- ① 전국연극제 운영규정을 2017년도부터 대한민국연극제 운영규정으로 변경.
- ②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'16. 8. 31) 제4조(조직구성)

- ① 조직위원회, 집행위원회 내용 추가.
- ②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'16. 11. 14) 제6조(경연참가자격)

- ① 비회원 참가자격 내용 삭제.
- ②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'16. 12. 26) 제5조(경연참가단체), 제7조(경연참가작품)

- ① 2017 한시적 연합단체 참가 허용.
- ② 외국 소설 각색 작품은 창작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③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'17. 4. 17) 제4조(조직구성), 제5조(조직의 역할), 제6조(경연참가단체), 제7조(경연참가자격), 제12조(심사방법), 제16조(심사방법)

- ① 주관으로 내용 수정.
- ② 제5조 (조직의 역할) 조항 추가, 내용 수정.
- ③ 단, 2017 한시적 연합단체는 참가 허용한다. 문구 삭제.
- ④ 제7조 (경연참가자격) 내용 수정.
- ⑤ 심사위원은 사전에 수상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은 유지해야한다. 내용 수정. 최종 심사회의는 녹취하며,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. 내용 추가.

- ⑥ 본 대회 16개 시·도 참가대표, 지회장이 요청할 시에는 심사내용 원본을 공개 할 수 있다.  
내용 수정.
- ⑦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'17. 10. 30) 제9조(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)

- ①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~9인으로 구성. 및 문구 수정.
- ②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'18. 04. 30) 제8조(경연참가작품)

- ① 창작초연작에 한하여 작품료 지급 조항 삭제 (16개 본선 참가작에 작품료 지급)
- ②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'19. 03. 30) 제7조(경연참가자격) (심사운영)

- ① 코러스 등에 대한 사항 추가
- ② 제26조 심사운영 4번 삭제
- ③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'19. 08. 27)  
제7조(경연참가자격), 제8조 (경연참가작품), 제13조(시상훈격)

- ① 제7조(경연참가자격) 타지역 및 비회원 50%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. 내용 수정
- ② 제8조(경연참가작품) 참가규모 내용 추가
- ③ 제13조(시상훈격) 시상인원 일부 수정
- ④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'20. 02. 10) 제9조(경연참가제한)

- ① 경연참가제한에 대한 조항 추가
- ②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'21. 02. 08) 제13조(심사방법)

- ① 제13조(심사방법)에 대한 조항 추가
- ② 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